

의안번호	2218087
의 퇴 인	김건의원
회 답 일	2026.8.12.
추계번호	26D1915

북한 특수자료 관리에 관한 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제정안에 따라 통일부에 특수자료심의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는 경우, 추가 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825만원씩 5년간 총 4,125만원으로 추계됨

[표 1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
특수자료심의위원회 설치 (안 제5조)	8.25	8.25	8.25	8.25	8.25	41.25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5조(특수자료심의위원회)	특수자료의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특수자료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함)를 둔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은 통일부차관이 되고, 부위원장은 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1급 상당 공무원이 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함 -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-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	의무규정
2	안 제11조(특수자료의 연구·조사·연계 지원)	정부는 대학, 민간단체 및 국공립 연구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특수자료에 대한 연구·조사 및 연계 활동을 지원할 수 있음	재량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5조(특수자료심의위원회)	○	—
2	안 제11조(특수자료의 연구·조사·연계 지원)	×	정부의 연구·조사 및 연계 활동에 대한 지원 규모와 방식 등을 현 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함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제정안에 따라 설치되는 특수자료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함)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며, 추가재정소요는 민간위원에게 지급되는 회의참석수당에 한정하여 추계함
-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, 위원회 민간위원 수는 통일부의 유사 위원회인 “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”(당연직 16명, 위촉직 8명)를 참고하여 전체 위원의 3분의 1인 5명으로 가정함
-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가 연간 3회 정도 회의를 개최하므로 이를 참고하여 연간 회의횟수는 3회로 가정함
- 위원회 민간위원의 회의참석수당 단가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위촉위원 회의참석수당¹⁾ 및 안건검토비²⁾를 참고하여 55만원으로 가정함
- 회의참석수당 단가와 민간위원의 수는 추계기간 동일한 것으로 가정함

1) 「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」(기획예산처)

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1일당 200,000원내(서면심사 150,000원내)에서 지급하되,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100,000원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으며, 원격지에서 참석하는 경우에는 교통비·식비·숙박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(220목) 또는 일반수용비(210-01목)로 추가 지급할 수 있음

2) 통일부의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안건검토비 사례비 25만원 준용

- 제정안은 부칙에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, 추계기간은 법안 심사기간을 고려하여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위원회 민간위원의 수(5명)에 연간 회의 횟수, 회의참석수당 단가를 곱하여 추계함
- 제정안에 따라 통일부에 특수자료심의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는 경우, 추가 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825만원씩 5년간 총 4,125만원으로 추계됨

[표 2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명, 회, 백만원)

구분	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연평균
특수자료 심의위원 회 설치 (안 제5조)	민간위원	5	5	5	5	5	—	—
	회의횟수	3	3	3	3	3	—	—
	수당단가	0.55	0.55	0.55	0.55	0.55	—	—
	추가재정소요	8.25	8.25	8.25	8.25	8.25	41.25	8.25

주 1. 본 추계는 민간위원 회의참석수당만 추계한 것임

2. 본 추계에서 위원회의 추가재정소요는 위원회 회의횟수를 연도별 12회로 가정하여 추계한 것으로, 그 횟수가 달라지면 추계금액은 변경될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추가재정소요는 위원회 회의횟수를 연도별 3회로, 민간위원 수를 5명으로 가정하여 추계한 것으로, 그 횟수가 달라지면 추계금액은 변경될 수 있음

V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임지원	김안나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임지원	02-6788-4664	img1@assembly.go.kr